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연금저축 추가납입특약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주계약에 준함

나. 보험료 납입기간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당월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함

다. 피보험자 가입나이

주계약에 준함

라. 보험료 납입주기

해당사항 없음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추가납입특약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당월 주계약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는 주계약의 납입유예기간 동안 추가납입특약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다.

나. 추가납입특약보험료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주계약 기본보험료 합계액의 200% 이내,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특약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한다)은 1,800만원 이내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적용대상계약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해당하는 연금저축 상품

14. 기타

가.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가입한도 등의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

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사업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은 주계약에 준함